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4. 2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4월 11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4년 4월 16일
- 다. 상정일자 : 제187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4년 4월 22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의택

가. 제안이유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을 증원하여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규제개혁추진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6급이하 정원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안 제2조),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6급이하 1명은 2015년
3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함(안 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진표)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 3.10 ~ 3.12 규제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
사항과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2014. 3.19)에 의거, 시·군·구 부단체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T/F)에서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할 6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여 규제개혁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현재 마포구 정원을 “1,300명”에서 “1,30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1명”에서 “1,272명”으로 1명 증원(안 제2조)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6급이하 1명을 반영하고,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6급이하 1명은 2015년 3월 31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안 부칙 제2조)는 것으로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부터 제 30조(정원의 규정), 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특히 시민생활 현장에서의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기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